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2일, 허영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8.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4.8.20.) 상정, 축조심사, 의결

(수정의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8.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허영 의원)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국내 산업단지 2,015개에 원자력발전소 5기에 해당하는 태양광 잠재량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각각 연평균 10.8%와 8.0%의 증가율을 보여 산업 부문 전체와 비교하였을 때 약 4~5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등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증대가 필요함.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고, 입주기업의 파산 또는 이전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사업 기간 확보가 불확실하거나 대부분의 입주기업들이 추가적인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하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자력으로 설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등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과 확충에 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44조제1항),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에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 포함)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추가하도록 하며(안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온실

가스 감축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 지구조고도화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5제2항제1호·제2호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 제공, <u>에너지이용효율 개선</u> , 에너지 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 ----- ---- <u>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u> 을 위한 시설 <u>개선 및 확충</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 ----- -----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신설>	8의2. <u>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u> 및 <u>온실가스 감축 방안</u>
9. ~ 13. (생략)	9. ~ 13. (현행과 같음)
④ ~ ⑨ (생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생략)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중 <u>공공시설</u> 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 ----- ----- ----- <u>다음 각 호</u> <u>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 ----- ----- ----- -----.
<신설>	1. 공공시설
<신설>	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을 위한 시설

현행법은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 일부(공공시설)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는 별도로 없음.

그런데 정부는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 등의 정책을 통해 탄

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나, 탄소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주요 선진국 현황에 크게 못 미치는 등¹⁾ 에너지 구조 전환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 산업단지의 에너지 소비량은 국가 전체의 53.5%, 전체 산업부문의 83.1%를 차지하고 있고, 석유(51%)와 석탄(23.7%)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성이 높아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활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²⁾. 이에 정부는 산업단지 내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21개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에너지 사용 비중을 고려하여 스마트그린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단지³⁾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확산하기 위하여 정부·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급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구조고도화계획 수립단계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반영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동향

□ 2022년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7%로(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9.2%) 수준으로 전세계 재생에너지 평균 발전비중(14.8%) 및 OECD 국가 평균(34%) 대비 낮은 수준

○ 2030년까지 NDC 달성('18년 대비 40%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해 에너지 분야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

*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등) 및 신에너지(new energy, 연료전지 등 수소 인프라)를 포괄하여 신재생에너지로 통칭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김주현 금융위원장, 미래에너지펀드 조성 협약식 참석, 2024. 3. 19.) 별첨2 발췌

2) 자료: 국토연구원 국토이슈리포트 제80호(「탄소중립과 RE100실현을 대비한 산업단지 4.0 기본 구상」)

3) 2023년 기준 전체 산업단지 수는 1,306개로, 국가 산업단지는 50개, 일반산업단지는 731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44개, 농공단지는 481개임.

자료: 한국산업단지공단 「2024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전국산업단지(대상연도: 2023년도)」

치비용 지원을 통해 설비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용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최근 개정법률이 시행된 점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음.

첫째,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함께 일컫는 말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는 각각 다양한 유형이 포함될 수 있어 그 범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가 개정안에서 보급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표현을 인용하여 신재생에너지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둘째, 개정안 발의(6.12.) 이후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현행법⁴⁾에 따라 안 제45조의2제2항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조항이 2개 조항으로 분리·개정되었으므로, 현행법에 맞게 조문위치 및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55호, 2024. 1. 9., 일부개정]

구법은 사업시행자⁵⁾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⁶⁾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그런데 「산업단지 입지킬러 규제 혁파방안」(2023.8.23.)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실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산단발전전략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구법상 사업시행자가 검토하도록 한 사항 중 일부를 시·도지사가 검토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정됨.

한편,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에게 이관되지 않은 사항을 검토하여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됨.

[표 1] 구법 및 현행법의 구조고도화계획 관련 조문비교

구 법	현 행 법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좌 동)
① 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좌 동)
② 관리기관의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및 관리권자 보고	(삭 제)
③ 사업시행자의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② 시·도지사의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5)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관리기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을 준수하는 법인에 한정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5. 그 밖에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구 법	현 행 법
제1호(대상 산업단지 현황 및 경쟁력분석)	→ 제1호
제2호(대상 산업단지의 발전전략과제)	→ 제2호
제8호(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공공시설 등의 정비 및 확충방안)	→ 제5호
제9호(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 제3호(지역발전계획 연계 및 입주업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방안) → 제4호(성장유망산업의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제10호(기업·연구소·대학 등의 유치, 산학융합 활성화계획과의 연계방안)	→ 제6호(기업·연구소·대학 및 인력유치 방안)
(신 설)	제7호(정주·교통여건 및 생활환경 개선)
(신 설)	③ 시·도지사 계획수립·변경시 의견청취·협의
(신 설)	④ 사업시행자의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
(신 설)	제1호(사업 목적 및 필요성)
제3호(사업 시행기간 및 시행자)	→ 제2호
제4호(예정지구 위치 및 면적)	→ 제3호
제5호(예정지구 현황 및 경쟁력분석)	→ 제4호
제6호(사업시행방법)	→ 제5호
제7호(토지이용계획 변경)	→ 제6호
제11호(재원조달방안)	→ 제7호
제12호(개발이익 재투자계획)	→ 제8호
제13호(기타)	→ 제9호
④ ~ ⑨ (생 략)	⑤ ~ ⑫ (생 략)

구법은 제8호에서 산업기반시설7(에너지시설)의 정비 및 확충방안

7) 제2조(정의)

10. “산업기반시설”이란 용수공급시설, 교통·통신시설, 에너지시설, 유통시설 등 기업의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시설을 말한다.

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가지조문으로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종전 제8호에 따른 에너지시설 정비 및 확충방안을 시·도 지사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으로 수립하도록 개정(법 제45조의2 제2항제5호)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개정안의 위치를 동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의2로 이동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시설 개선 사업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포함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발의 이후 법률이 개정된 점을 반영하여 법체계에 맞게 일부 사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경미한 자구 수정을 거침.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8.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고도화계획에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최근 개정된 법률(제19955호, 2024. 7. 10. 시행)이 시행된 점을 반영하여 조문위치를 수정하였음(안 제44조제1항, 제45조의2제2항제5호의2 신설 및 안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 삭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4조제1항 중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안 제45조의2제3항제8호의2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법률 제19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 정보 제공, <u>에너지이용효율 개선</u> , 에너지 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 정보 제공, <u>에너지이용효율 개선</u> , 에너지 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 ----- ----- ----- -- <u>에너지이용효율 개선</u> , <u>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u> 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 ----- ----- ----- ----- -----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 ----- ----- ----- -- <u>에너지이용효율 개선</u> , <u>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u>

준 20년이 경과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이하 “구조고도화 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이하 “구조고도화 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5. (생	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 계획(이하 “구조고도화 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5. (현
---	---	---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리권자(국가 산업 단지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국가 산업 단지의 관리기관을 포함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협의 결과를 구조 고도화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 -----.	----- ----- ----- ----- ----- ----- ----- ----- ----- ----- -----.
1. ~ 8. (생략) <u><신 설></u>	<u><신 설></u>	1. ~ 8. (생략) <u>8의2. 신재생 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 방안 (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u>	<u><삭 제></u>

9. ~ 13. (생 략) ④ ~ ⑨ (생략)	④ ~ ⑫ (생략)	<u>감축 방안</u> 9. ~ 13. (생 략) ④ ~ ⑨ (생략)	④ ~ ⑫ (현행과 같 음)
--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효율 개선”을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신·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제45조의5제2항 본문 중 “공공시설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공시설
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u>에너지이용효율 개선</u> ,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 ----- <u>에너지이용효율 개선</u> , <u>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확충</u>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내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을 착공일 기준 20년이 경과된	② ----- ----- ----- ----- ----- ----- ----- -----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5. (생략)

<신설>

6. ~ 7. (생략)

③ ~ ⑫ (생략)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생략)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5
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가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
화사업 중 공공시설에 한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산업단지 중 착
공 후 30년 이상된 국가산업단
지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구조
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산업기
반시설에 대하여도 필요한 비
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신설>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방안(시설 개선 및
확충 방안을 포함한다) 및 온
실가스 감축 방안

6. ~ 7.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

-----.

1. 공공시설

2.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설
--	-----------